##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 충 청 북 도 의 회 <br> 교 육 위 원 회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페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1.09.30.(금)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하재성 교육의원외 6 인
나. 발의일자 : 2011년 09월 09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09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09월 21일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O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재성 교육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 15 조제 1 항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19 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70 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의 연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민이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 나．주요내용

O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 구할 경우 연서는 19 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으로 정함 （안 제2조）

## 3．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김왕년）

○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5조에서 위임한＂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경우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에 관한 규정은 1999．8．31．「지방자치법」에 신설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서 주민의 수를 적용하여 오던 중 2006．5．24．법률 제7957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이에 따라＜붙임 1＞ 과 같이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O$＜붙임 1 ＞의 전국현황과 이미 제정되어 있는 충청북도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인＂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으로 정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안 제2조 후단의 "연서 주민 수에서 1 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 명으로 본다."는 규정은 19세 이상 주민 총수 대비 연서 주민 수를 계산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계산 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이는 조문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수점 이하에 대한 논쟁을 사전에 제거하는 바람직한 규정이라 판단됨.

예시) 충청북도 19세 이상 주민 총수( 2010. 12. 31.기준)
$1,208,325$ 명을 $1 / 100$ 로 나누면 $12,083.25$ 명이고, 소수점 이하는 1 명으로 계산하여 2011년 9월 현재 19세 이상 주민 충수 대비 연서 주민 수는 12,084명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안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비교표

$\square$ 시도•교육청

| 시•도 | 조 례 명 | 연 서 <br> 주민수 | 제정일자 |
| :---: | :---: | :---: | :---: |
| 서울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br>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 $1 / 100$ | 2010.12.30. |
| 전남 | 전라남도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 <br> 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 $1 / 100$ | 2011.6 .27. |

$\square$ 시 • 도자치단체

| 시 - 도 | 조 례 명 | $\begin{aligned} & \text { 연 서 } \\ & \text { 주민수 } \end{aligned}$ | 제정일자 |
| :---: | :---: | :---: | :---: |
| 서울 | 서을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1/100 | 2006.07.19. |
| 부산 | 부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1/85 | 2000.05.04. |
| 대구 |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 1/90 | 2006.05.17. |
| 인천 | 인천광역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 1/85 | 2006.10.16. |
| 광주 | 광주광역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 1/85 | 2006.07.15. |
| 대전 |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1/85 | 2006.05.12. |
| 울산 | 울산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1/85 | 2006.10.12. |
| 경기 | 경기도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2011.04.07.폐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1/100 | $\begin{aligned} & \text { 2006.04.03. } \\ & \text { 2011.04.07. } \end{aligned}$ |
| 강원 |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1/100 | 2006. 5.12. |
| 충북 |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 1/100 | 2006.10.04. |
| 충남 |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1/100 | 2007.10.01. |
| 전북 | 전라북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 1/100 | 2006.07.14. |
| 전남 |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1/100 | 2006.08.18. |
| 경북 | 경상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 1/100 | 2006.05.04. |
| 경남 |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1/100 | 2006.08.24.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 1/200 | 2009.07.08.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교육•학에에 관한 주민의 조려 제정 및 개폐 <br>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려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ㄷㅣㅣ방자치법」 제 15 조제 1 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 수) ㄷ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교육•학 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는 19 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 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 명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 청구한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시행 2011．1．1］［법률 제10219호，2010．3．31，타법개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1） 19 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 18 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화 제 175 조에 따른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 세 이 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 70 분의 1 이하，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 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 분의 1 이상 20 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 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 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4．1＞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출입국관리법」제 10 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 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